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14호

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규정에 의거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9. 21.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8-1번지의 1필지
 - 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6,759.8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대표자 윤영숙)
 - 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6길 10-21, 302호
(방배동, 평산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 09. 20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대지면적 : 36,759.8㎡

2) 건축규모 : 지하4층/지상20층 아파트 8개동 752세대 및
부대·복리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(상가 해당없음)

공급대상	주택 규모별 공급세대수			
	계	60㎡ 이하	85㎡ 이하	85㎡ 초과
계	752	227	372	153
토지등소유자	503	114	236	153
일반분양	203	71	132	
소형주택	39	39		
보류시설	7	3	4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

1) 신설 : 도로 1,063.24㎡ 공원 1,662.25㎡

2) 폐지 : 국공유지 없음

라. 기존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18년 01월

※ 관계서류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2155-7349)에 비치하고
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